

1.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및 이력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 신고 시 사업계획서(별지 1), 신고·변경 수리 시 신고수리증(별지 2) 발급, 신고수리대장(별지 3)을 정함

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 센터 설치 시 운영계획(별지 4)을 산림청장에게 제출(매년 2월 말)

다.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산림분야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정기적 협력회의, 지자체 등과의 국제교류)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이력관리)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수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 관리해야 한다.

1. 사업계획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 사업명
3. 사업대상국
4. 사업목적
5. 사업수행자
6. 투자규모
7. 사업면적
8. 사업기간
9. 예상실적
10. 신고수리일
11. 신고 담당자 성명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 운영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리협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대상국가와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령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이력관리)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수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관리해야 한다.

1. 사업계획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 사업명
3. 사업대상국
4. 사업목적

5. 사업수행자
6. 투자규모
7. 사업면적
8. 사업기간
9. 예상실적
10. 신고수리일
11. 신고 담당자 성명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 운영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리협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대상국가와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기간	30일
사업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현지사업자)	상호	국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투자규모		투자비율	
	국가 및 대상지 위치		대상지 면적(ha)	

<사업 내용(요약)>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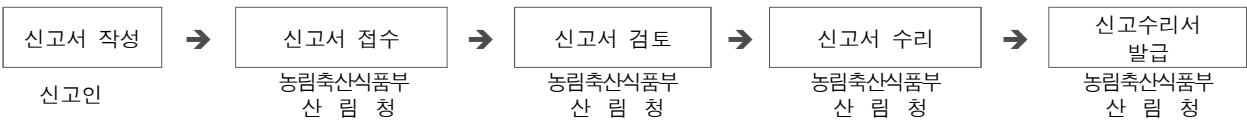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00.00.>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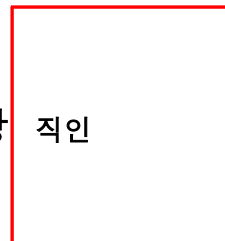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수리증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현지사업자)	상호	국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투자규모		투자비율
	국가 및 대상지 위치		대상지 면적(ha)
	사업진행단계		산림유형
	적용방법론		사업기간
	예상실적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 사항

[illegible]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00.00.>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수리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제1부. 개요

제1장 일반정보

제2장 기관현황

제2부. 운영계획

제1장 운영목적

제2장 비전과 전략

제3장 세부 시행계획

제4장 자금집행계획

제3부. 기대효과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연 락 처	(042) 481 - 4088